국토교통부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CONTENTS







CHAPTER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CHAPTER 2 의무화 기술지원 공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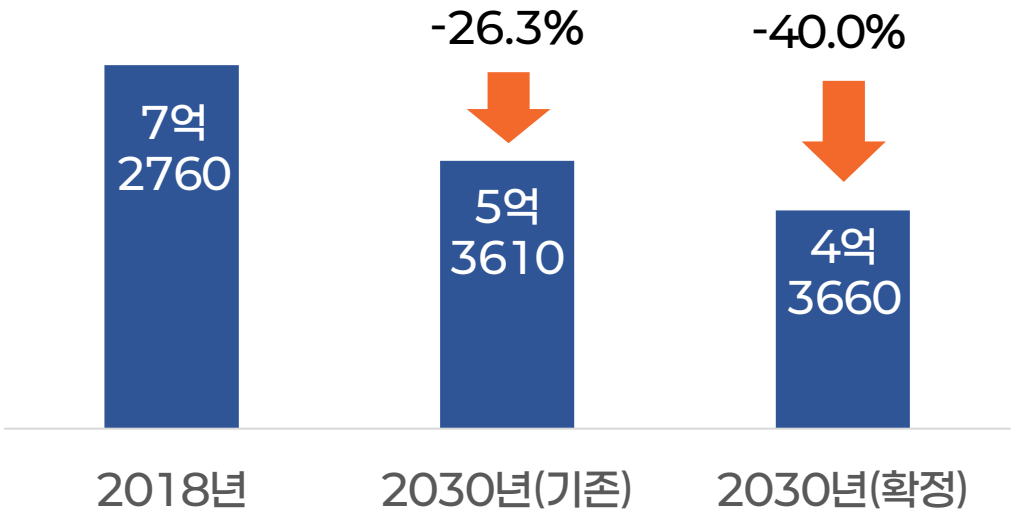
CHAPTER 3 의무화 기술지원 업무 내용

CHAPTER 4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CHAPTER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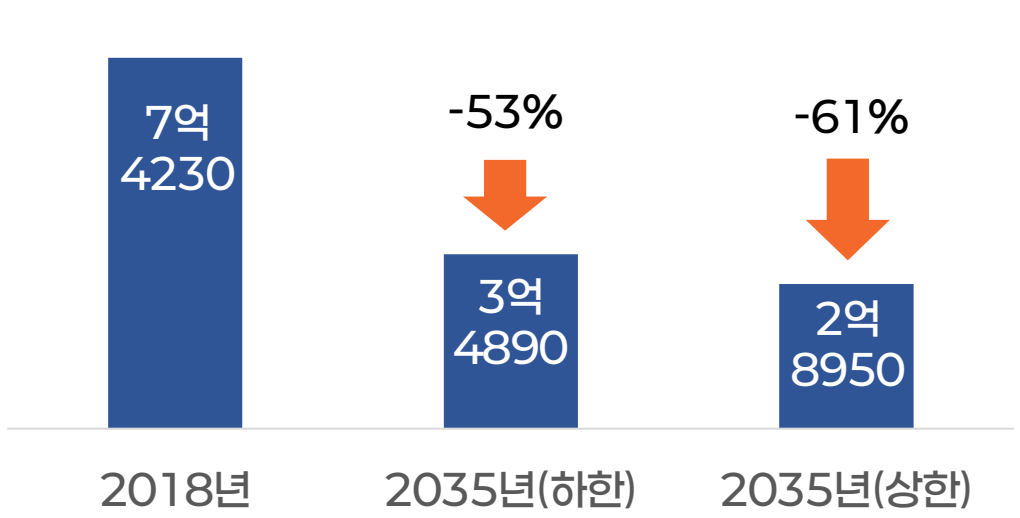
01 사업 배경

2030 NDC 상향안('21.10)



- 국가전체 '18년대비 40% 감축목표 설정 (291백만톤CO_2eq.)
- **건물부문** '18년 대비 **32.8% 감축목표** 설정(64백만톤CO_2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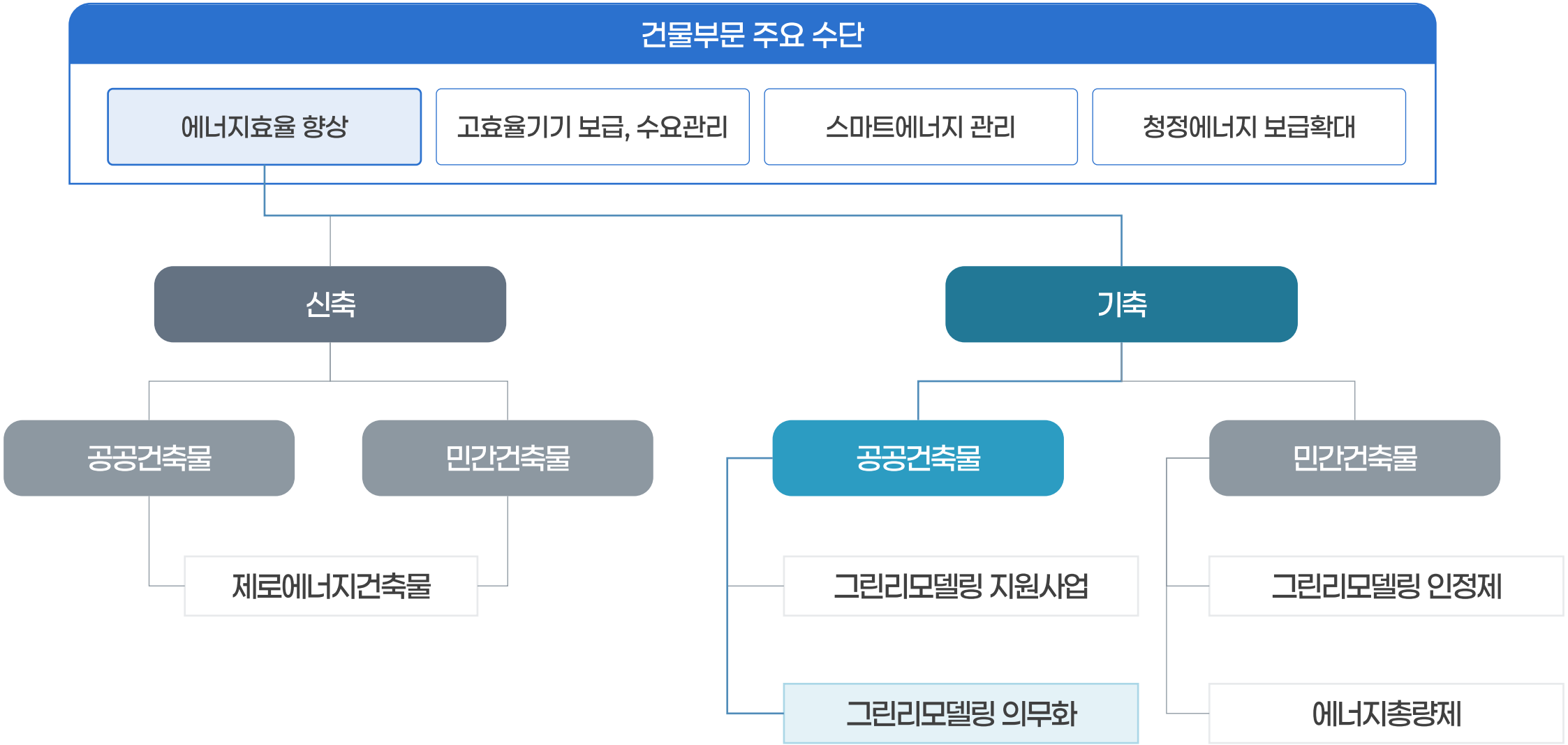
2035 NDC('25.11)



- 국가 전체 '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 설정
- **건물부문** '18년 대비 **53.6~56.2%** 감축목표 설정

※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화로 2018년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 NDC와 상이

01 사업 배경


건물부문 주요 수단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수요관리
스마트에너지 관리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신축
기축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에너지총량제

01 사업 배경

지속적인 기축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강화 요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추진('25년 이후)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 ('21.12)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검토 (과제 1-3-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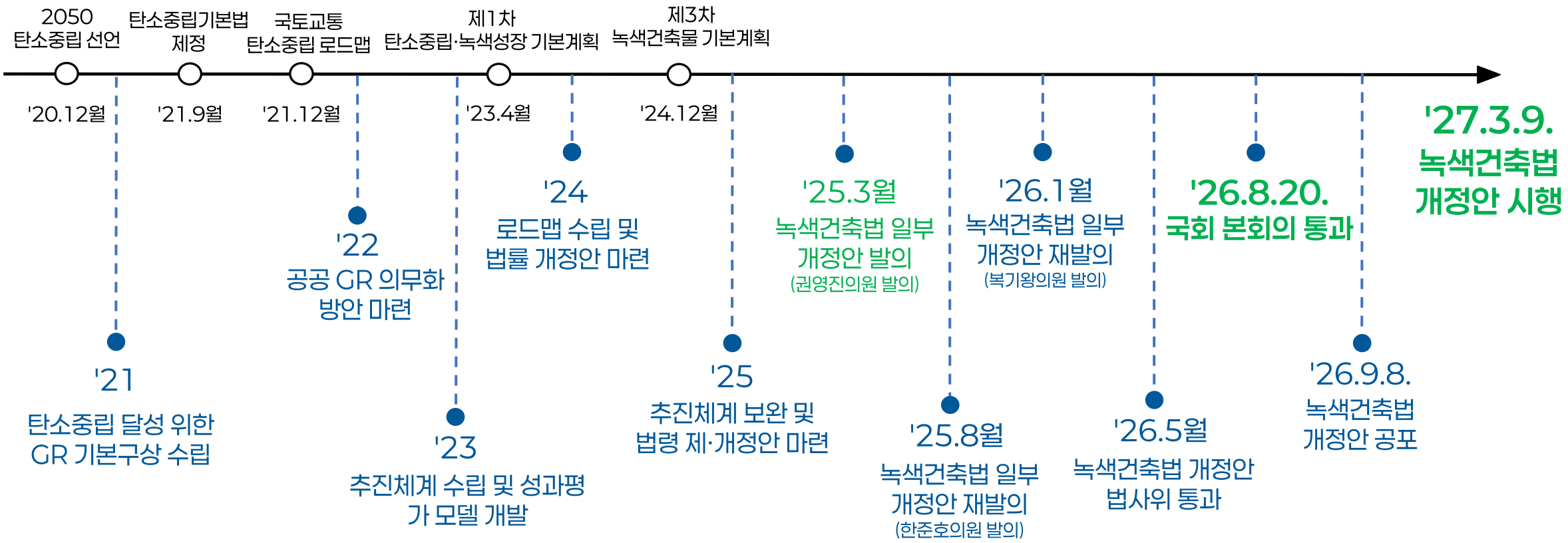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과제 1-3-2-2)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 ('25.8)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포함) (국정과제 4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을 위한 녹색건축법 개정 완료('27.3.9. 시행 예정)

02 추진 경과


2050 탄소중립 선언
'20.12월
'21
탄소중립 달성 위한 GR 기본구상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1.9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월
'22
공공 GR 의무화 방안 마련
'23
추진체계 수립 및 성과평가 모델 개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월
'24
로드맵 수립 및 법률 개정안 마련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4.12월
'25
추진체계 보완 및 법령 제·개정안 마련
'25.3월
녹색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권영진의원 발의)
'25.8월
녹색건축법 일부 개정안 재발의
(한준호의원 발의)
'26.1월
녹색건축법 일부 개정안 재발의
(복기왕의원 발의)
'26.5월
녹색건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6.8.20.
국회 본회의 통과
'26.9.8.
녹색건축법 개정안 공포
'27.3.9.
녹색건축법 개정안 시행

03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 선정 기준,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03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추진대상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04 추진 대상

GR 의무화 중장기 계획



05 GR 의무화 추진 절차

대상선정
- (GR센터) 선정·통보
- (이행기관) 의견 제시

계획 수립
- (이행기관) 추진계획 제출
- (GR센터) 계획 검토·승인

이행 및 점검
- (이행기관) 설계·시공
- (GR센터) 점검

성과평가
- (이행기관) 운영
- (GR센터)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기술지원

계획 수립 지원
- 기초 조사
- GR 추진계획 수립
- 공공건축 기획

~'27.10

이행 지원
- 설계공모 지원
- 기본·실시설계 지원
- 심의 지원

'27.11~

CHAPTER 2
의무화 기술지원 공모사업

01 공모사업 개요

① (**공 모 명**)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② (**사업목적**) GR 의무화 이행기관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단계별 기술지원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선정**

③ (**사업규모**) 총 사업비 **25,350백만원,** ‘26년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 150동(평균 연면적 19,000m²)**
공공건축물 150동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10개 전문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

구 분	건물군1	건물군2	건물군3	건물군4	건물군5	건물군6	건물군7	건물군8	건물군9	건물군10	계
예상 동수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총사업비 (단위 :억)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253.5

* 건물군에 대한 설정과 수행기관별 배정은 협상절차를 통해 완료되며, 설정 과정에서 건물군별 동수 및 사업비는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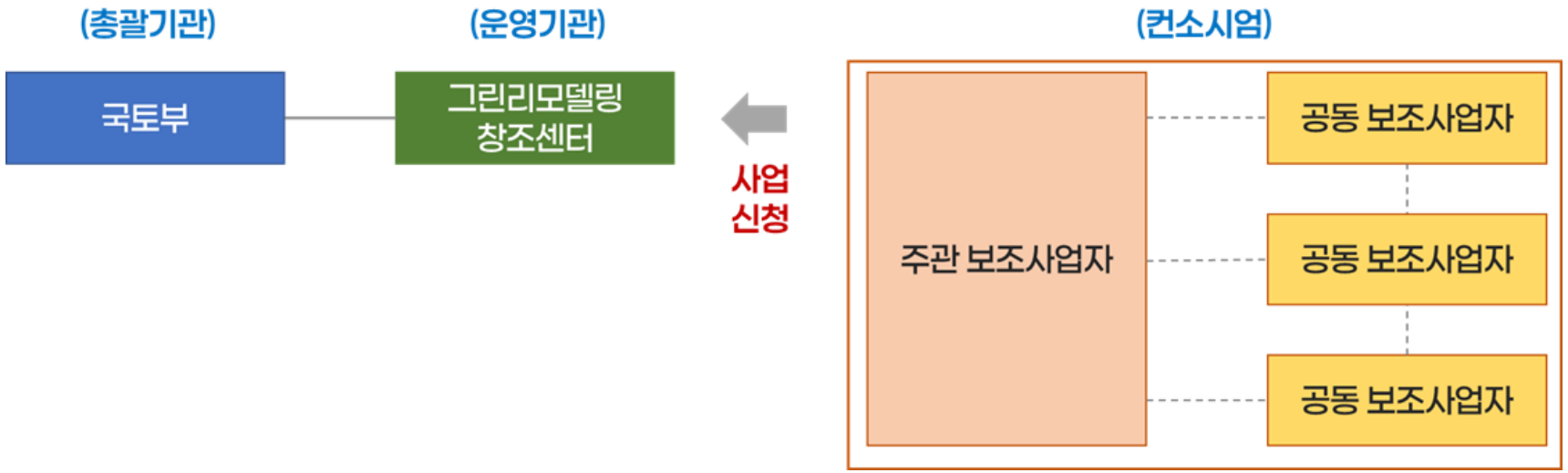
④ (**사업기간**) 착수일 ~ **'28.12.31** (25개월)

⑤ (**모집기간**) **’26.10.8(목) ~ ’26.11.3(화) 18:00까지** (총 27일간)

02 참가 자격

① **컨소시엄 구성** : 최소 2개 이상 최대 5개 이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함**
-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율 필수**
-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이 다를지라도 **사실상 동일 사업체이거나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로 구성 불가**(적발 시 사업 배제)
- 동일기관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음**



② **비수도권 기관 참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관을 최소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비수도권 기관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비수도권에 둔 자**를 말한다.

02 참가 자격

③ **참여기관 자격 조건** : 모든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본 사업 **모집기간 마감일('26.11.3.)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모든 참여기관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30조에따른 **'그린리모델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참여기관 중 1개 이상**은『건축사법』제18조에 따라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④ **참여인력 자격 조건** : 신청기관은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참여 인력에 포함**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인정**되며, 참여 인력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인정** 가능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구조안전전문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가 '건축'이며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이며 전문분야가 '구조'인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에 한함)

⑤ **제한 요건** : 참여기관은 아래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해당하는 기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02 참가 자격

유의사항

1. 선정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 제외**
- **사업선정 후에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법인 등기,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검증 등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을 통하여 사업선정 취소 가능**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02 참가 자격

유의사항

2. 보조사업자 추가 불가

- 최종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수행기관은 **하위 간접보조사업자를 추가로 모집(공모) 또는 지정 불가**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회계감사 및 검증보고서 작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계약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승인 필요**

3. 외부인력 참여 불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은 신청기관에서 고용한 인력 외 **외부기관 인력 또는 프리랜서 투입 불가**

  ➢ **(고용한 인력) 비정규직 포함 (4대보험 + 재직증명서 제출)**

03 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6.10.8(목) ~ '26.11.3(화)**

② (**신청마감**) **'26.11.3(화) 18:00**

③ (**신청방법**) email 제출 (grcenter@kalis.or.kr) *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④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정량, 정성), 샘플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등 일체

-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각 1부씩 전자파일 첨부 후 신청서 제출

⑤ (**발표평가**) **'26.11.11(수) ~ '26.11.12(목)**

- (**장소**) **대전** 인근 예정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개별 통보)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수신' 처리 된 건에 한하여 접수 및 인정**
2. 제출한 사업신청서·제안서의 미비한 사항, 사실 여부 **확인 필요시 운영기관에서 보완 및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요청기한** 內**(별도안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접수처리 불가)
4.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운영기관 '문의처'에 유선으로 통보 및 확인 必**
5. Email 제출/접수 후, **수정 불가** (**최초 수신된 신청서류로 접수** 처리)

0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안내

부문	제출 서류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한글, PDF	-
2	**사업계획서(정량평가)**		별지 제2호 서식	한글, PDF	분량제한 없음
3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정성평가) 기본양식	별지 제3호 서식	한글, PDF	60페이지 이내 (표지 및 간지 포함)
		사업계획서(정성평가) 요약서	-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예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참여 인력 현황(예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도(예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예산계획 총괄표(기본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예산계획 세부계획표(기본양식)			
4	**샘플보고서**		-	한글, PDF	분량제한 없음
5	**발표자료(사업계획서(정성평가 부문), 샘플보고서)**		-	PPT, PDF	30분 분량
6	**기타**	신청자격 증빙자료 일체	-	PDF	주관기관, 공동기관 모두 제출
		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설명 금지 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본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인감신고서(기본양식)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7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별도안내	
	보안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형식에 없는 증빙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만 첨부 가능(원본대조필 必)**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의 경우 제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사업 참여자 모두 제출

04 선정절차 및 기준

구분		일시	비고
신청 마감		'26.11.03(화) 18:00시	–
1단계	**제출서류 검토(정량평가)**	'26.11.04(수) ~ '26.11.10(화)	GR 창조센터 자체평가
	발표 평가(정성평가)	'26.11.11(수) ~ '26.11.12(목)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1.13(금)	–
2단계	**기술 협상 (개별통보)**	'26.11.16(월) ~ '26.11.27(금)	변동 가능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26.11.30(월)	변동 가능

발표평가 방법

- **발표자료** : 사업내용을 PPT 또는 PDF로 요약하여 발표
- **발표시간** : **50분** 이내(**발표 30분, 질의문답 20분**)

* 공모 **신청기관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표자료를 재요구 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공모 **신청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신청기관의 요구에 의한 발표순서는 변동은 없음

04 선정절차 및 기준

1단계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10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90점)을 배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상위 10개 기관을 선정**

구분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 재무구조	5
			투입인력	5
소 계 (①)				**10**
정성평가	**5**	기관역량	수행기관 역량 평가	5
	10	과업이해도	정책 이해도	5
			과업 이해도	5
	20	사업수행계획	추진방향·전략의 적정성	10
			추진체계의 타당성	5
			추진일정의 적정성	5
	25	사업실행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절차	10
			과업별 투입인력·자원의 적정성	5
			사업추진 과정의 운영·협업 및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계획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수행역량	5
	5	사업성과	사업성과품 계획의 완성도 및 활용성	5
	15	사업관리	사업 관리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5
			관련 기술이전 우수성	5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10	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계획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5
			국고보조사업 이해도 및 부정수급 예방방안	5
소 계 (②)				**90**
합 계 (①+②)				**100**

04 선정절차 및 기준

1단계 (평가기준)

- 협상대상자는 **평균점수*가 65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만 해당**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신청기관이 10개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선정 불가

- **평균점수가 동일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정성평가 총점이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실행], [사업수행계획] 등 배점이 높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사업실행] > [사업수행계획] > [사업관리] > [과업이해도] > [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 계획] > [사업성과] > [기관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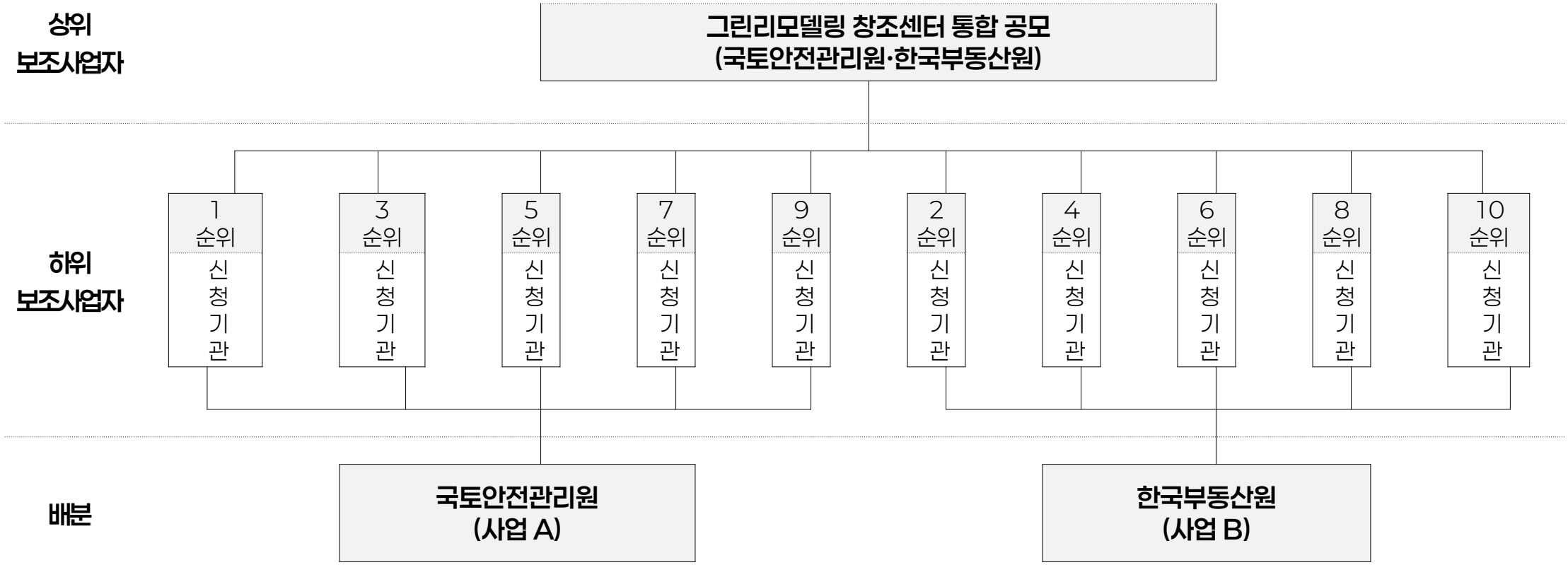
-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04 선정절차 및 기준

1단계 (운영기관별 배분)

- 공동 운영기관 간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운영기관별 각 5개씩 배분**

※ 협상대상자에 대한 운영기관 배분은 1단계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협상대상자는 **운영기관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04 선정절차 및 기준

2단계 협상 (평가기준)

- 총괄·운영기관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별도의 협상은 생략**

  ※ 상위 10순위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1위(차순위) 이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을 포기한 경우** 또는 주요 협상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총괄·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음**

  ※ 예) 평가점수 8위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11위 신청기관과 협상을 진행함

- 협상내용은 의무화 기술지원 대상 **건물군 배정**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예산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재공모

-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10개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규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 등)에 따라 미선정 기관 수의 범위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04 선정절차 및 기준

건축물 배정 방법

- **(대상 건축물 배정 및 예산 조정)**

① 배정 방법

➢ 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무작위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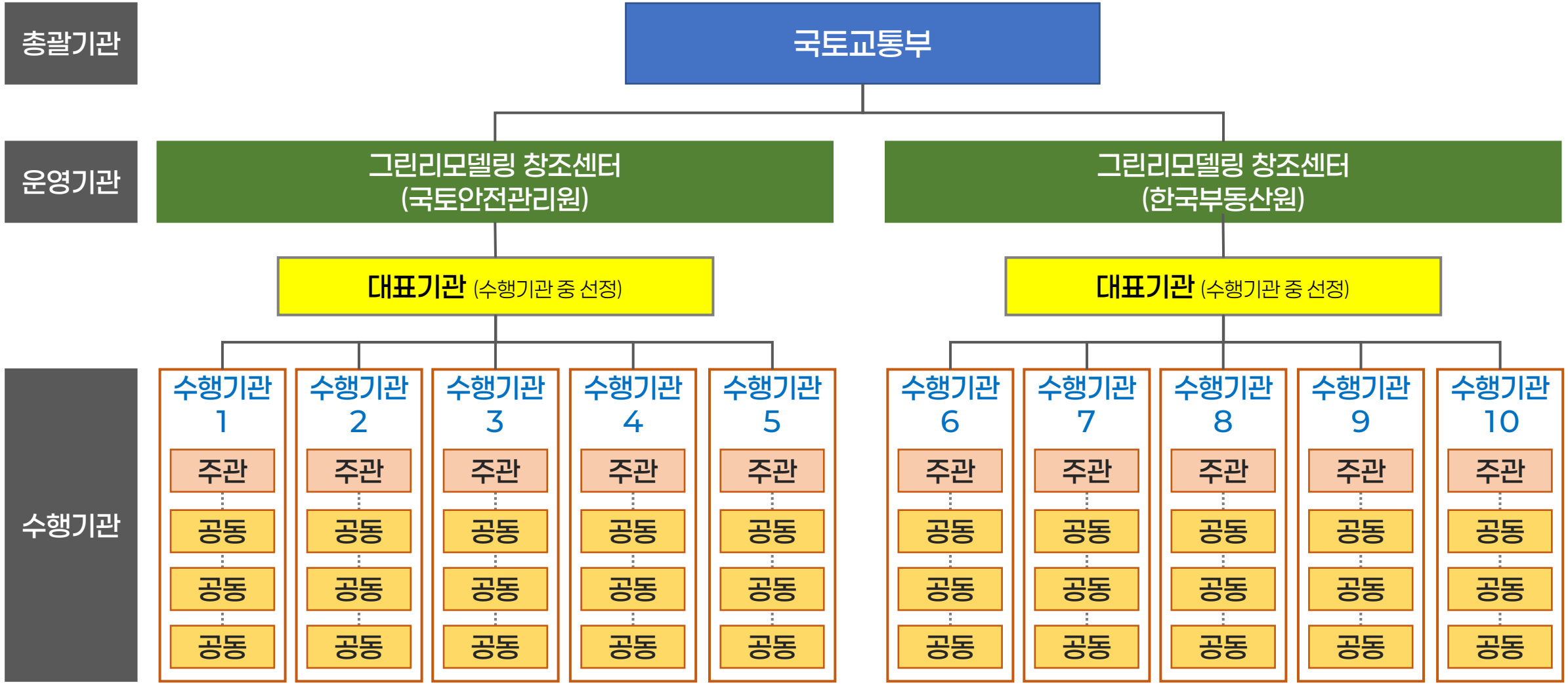
② 예산 확정

➢ 추첨을 통해 배정된 건축물에 **사전 정의된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③ 배정 건축물의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규모/용도 등 일부 차이에 대해서는 **최초 배정된 예산 내에서 해결.** 운영기관은 **최초 배정 건축물과 유사 건축물로 조정**

05 기술지원 추진 체계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한국부동산원)
대표기관 (수행기관 중 선정)
대표기관 (수행기관 중 선정)
수행기관
수행기관 1
수행기관 2
수행기관 3
수행기관 4
수행기관 5
수행기관 6
수행기관 7
수행기관 8
수행기관 9
수행기관 10
주관
공동
공동
공동

05 기술지원 추진 체계

기관별 역할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부)		• 정책·사업 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GR 창조센터) (1차 보조사업자)		• 사업 기획·공고·선정·관리 등 업무 운영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간접보조사업자 (수행기관)	주관기관 (2차 보조사업자)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 • **공동기관에 보조금 재교부**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취합·조정·보고**
	공동기관 (3차 보조사업자)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

대표기관 선정/운영

- **동일 품질의 성과품 달성**을 위하여 **수행기관 간 협의·조정**
- 2단계 협상과정에서 운영기관별 **5개의 수행기관 중 1개 대표기관을 운영기관이 지정**

05 기술지원 추진 체계

보조금 교부 구조



06 유의사항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관은 본 공모의 신청자격, 사업내용, 관계법령, 사업비 집행기준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본 공모에 참여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누락·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참여기관별 수행범위·역할 및 사업비 배분액, 참여인력의 구성 및 참여율, 참여기관별·비목별 산출내역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보조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운영기관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출 후 임의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06 유의사항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내용과 평가결과는 관계법령 및 공모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총괄·운영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경우 총괄·운영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 편성·집행 및 정산

- 본 공모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자산취득비 등 유형자산 집행 불가**
- 사업비의 편성·집행·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관련 지침 및 본 사업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계획한 인건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인건비 **비목 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성 지급의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주요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통상임금의 **100% 초과하는 경우 환수** 예정
- 사업비를 관계법령, 교부조건 또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 시 불인정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반환·환수할 수 있음**

06 유의사항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다음의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지침 및 교부조건 등에 따르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과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공고내용은** 관계법령 개정, 사업 추진여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방법으로 안내**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총괄·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할 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소유는 일체 총괄·운영기관에 있으며,** 향후 총괄·운영기관이 활용·보급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공모 선정 이후부터 **과업의 준공까지 타기관(회사)과 인수합병 또는 지분양도·양수 등에 의한 회사의 구성 변경이나 출자지분율을**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였을 시 사업수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은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료까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하여 총괄·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운영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총괄·운영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된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 양수 및 양도(매각, 교환, 대여, 기증, 현물출자, 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 처분이 가능(관계법령 준수)함

07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등
-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민간보조사업자편)」등

CHAPTER 3
의무화 기술지원 업무내용

01 업무 구성

구분	단계	세부내용	비고
GR 계획 수립 지원	1. 기초조사	사전 기초조사	착수일 ~ '27.10
		현장조사	
		도면 현행화	
	2. GR 추진계획 수립	에너지 성능개선 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계획 수립	
		GR 추진계획(안) 작성	
	3. 공공건축 기획	공공건축 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 지원	
		공공건축 심의 지원	
GR 이행 지원	4. 설계지원	설계공모 지원	'27.11 ~ '28.12
		설계 지원	
		심의 지원	
기타 업무	5. 기타 업무	추진계획 변경 지원	착수일 ~ '28.12
		기술역량 이전	
		기타 업무 지원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1. 기초 조사

(**목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면 현행화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기초자료 정리**

① 사전 기초조사

- 건축물 기본정보, 지자체 및 시설관리 담당자, 설계도서 유무 확인 등
- 최근 3년간의 년간·월간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유류, 지역난방,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량 수집 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현황 확인
-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법정 구조 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및 구조 안전점검 등) 필요 여부 확인
- 건축물의 창호 교체, 설비 교체 등 보수 이력 및 확정된 보수 계획 유무 확인

② 현장조사

- 지자체 및 시설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 실별 사용자 수, 냉난방 설정 온도, 냉난방 스케쥴 등 운영현황 조사 (**조사양식 제공 예정**. 과업설명서 [붙임2] 참고)
- 건축물의 벽·지붕·바닥 단열, 창호,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등 설치 현황 및 노후도, 내구연한 조사
-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창호 주변, 벽체 우각부 등 열손실 부위 확인 (**KS F 2829 준수**, 과업설명서 [붙임3] 참고)
- 에너지 흐름 및 열원 파악, 건물별 설비 공유 현황 등 상세 조사
- 계량기 동별·용도별 분리 확인 및 기존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여부 확인
- 임의 증축 등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석면조사 필요 여부 확인 및 구조안전 육안조사(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필요 여부 파악) (과업설명서 [붙임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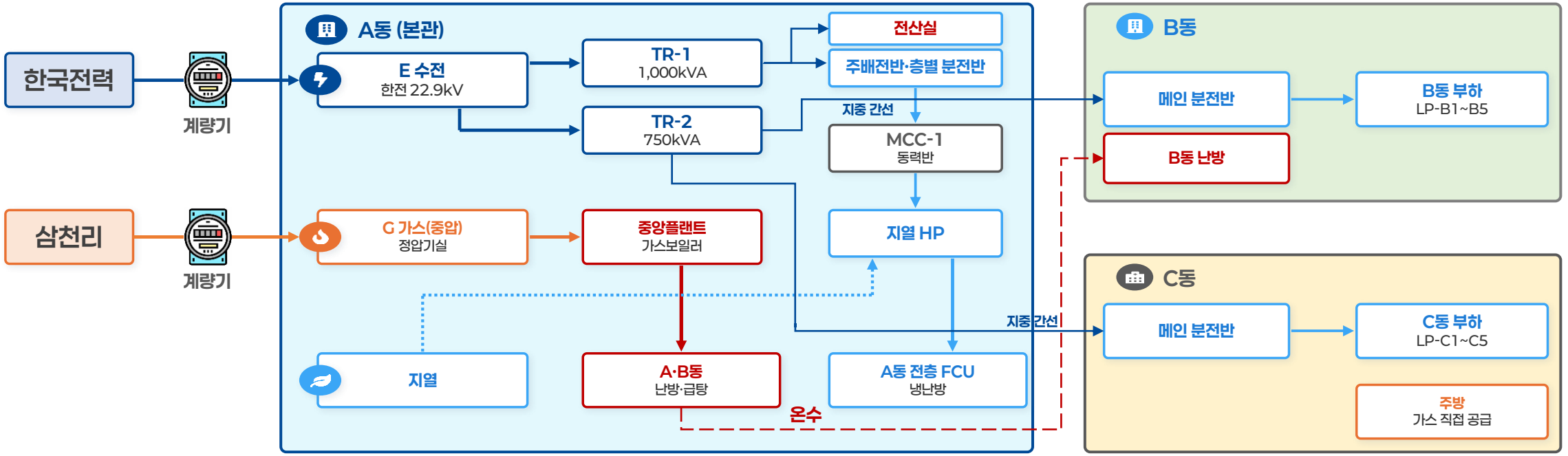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1. 기초 조사

(**목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면 현행화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기초자료 정리**

② 현장조사

- 에너지 흐름 및 열원 파악, 건물별 설비 공유 현황 등 상세 조사
- 계량기 동별·용도별 분리 확인 및 기존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여부 확인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1. 기초 조사

(**목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면 현행화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기초자료 정리**

③ 도면 현행화

-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면에 반영**(dwg 파일 형식)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기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도면 작성 < 과업설명서 [붙임1] >

구분	종류	내용
건축	법규검토서	대수선, 증축 등 건축인허가 관련 법규 검토
	건축개요	연면적, 건축면적, 주용도, 구조, 주차대수 등 일반사항
	도면 목록표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참고
	평면도	기둥, 벽, 창문, 마감재료 표시
	입면도	건물 입면 모두 작성
	단면도	각층 높이, 반자, 배관공간 등을 표시
	재료마감표(실내, 실외)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및 실외 마감 표시
	건물 조닝 및 벽체 구분도	실내·외 마감 상세도
	창호(일람표, 평면도, 상세도)	상세도는 주요 단면 표시(창호 상세 치수, 성능, 면적비 등 표기)
	부위별(형별)성능내역서	각 벽체별 구조체(재료 종류 및 두께)
	외피전개도	벽체별 면적

구분	종류	내용
기계	장비 일람표	주요 장비의 사항을 표기
	장비 배치도	주요 냉·난방 설비현황
	열원 흐름도	공급설비와 생산설비의 연결관계 포함
	계통도 (시뮬레이터 입력 필요자료)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공조덕트설비 계통도
		급탕배관 계통도
	냉난방(공조) 관련 도면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공조덕트설비 평면도
		기타 공조(환기설비) 관련 추가 도면 등
		냉매배관 평면도
	급탕 관련 도면	급탕 배관 평면도
	환기 관련 도면	급배기덕트평면도 및 전열교환기덕트평면도
	자동제어 관련 도면	동작설명서 (열원설비, 반송설비 제어방식 확인)
	가스배관 관련 도면	가스배관 계통도 및 배관 평면도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1. 기초 조사

(**목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면 현행화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기초자료 정리**

③ 도면 현행화

-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면에 반영**(dwg 파일 형식)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기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도면 작성 < 과업설명서 [붙임1] >

구분	종류	내용
전기	평면도	조명설비 평면도(조명기구 상세, 실별 조명 종류 및 개수)
		전열설비 평면도
		동력설비 평면도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수변전설비	수변전단선결선도, 분전반결선도
	기타	장비목록표, 장비일람표, 전기실 장비 배치도
신재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셀면적, 모듈, 설치상태(각도, 방위 등)
	일사조절장치	고정형 수직/수평 차양 관련 상세도
E흐름도 및 원격검침	에너지 흐름도	기존 에너지원별(전기, 가스 등)에너지 흐름도
	원격검침관련 도면 일체	열원흐름도(기계) 및 단선결선도(전기) 활용
	관제점 정보	전기, 가스, 지역난방 관련 모니터링 포인트 리스트

- 현행화 목록을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 가능**
  - ➢ GR에 대한 **E시뮬레이션 분석 가능 必**
- GR의무화 컨설팅에 따라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도면현행화 제외 불가능**
  - ➢ 도면현행화는 GR 전의 건축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 ➢ **GR 개선부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존 도면과 현재 사용현황이 다를 경우 도면 현행화 필요**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2.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목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계획 수립**

① 에너지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건축물의 노후도,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기초조사 내용 분석
-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GR 공사 요소(벽체단열, 냉난방 설비, 조명, 환기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발굴** 및 적용 공사의 **우선순위 도출**
- GR 공사 요소별 **구체적인 개선 방법** 제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및 그린리모델링 관련 행정규칙 등 **관련 기준 만족 필요**

  ➢ 건축 행위(그린리모델링, 개보수, 대수선, 증축 등) 및 행정 행위(신고·허가 등)와 관련된 모든 법/규정

- GR 공사 적용 요소 및 개선 방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가능 방안** 마련
-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GR **추진방안별 그린리모델링 전·후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분석**

  * 향후 과업 추진과정에서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에너지평가사 검토 및 확인 必**

②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 지역별·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용가능한 기술 요소(구조보강, 차수벽 등) 발굴** 및 공사의 **우선순위 도출**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2.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목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계획 수립**

③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계획 수립

- 건축물 동별, 에너지원별*, 에너지 용도별·설비별** 에너지흐름 파악 및 흐름도 작성,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계획도*** 작성

* 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유류 등

** (용도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 (설비별) 보일러, 냉방기, 난방기 등

*** 에너지원별 설치 도면과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사업자의 검토 및 확인 必**

➢ 운영기관의 역할로, **운영기관이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여 제출 성과물에 대해 검토/보완 요청**

④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작성

- 에너지 성능개선, 기후위기 적응계획,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계획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별 예상되는 **총사업비 산출, 이행기관의 예산조달 방법 및 의무화 추진 일정 제시**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별 경제성 분석, 기대효과 등 도출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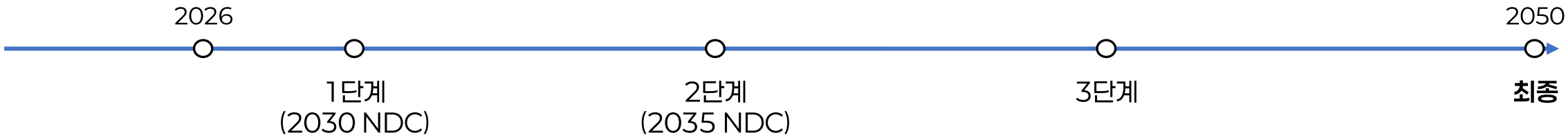
2.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목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계획 수립**

④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작성

- 에너지 성능개선, 기후위기 적응계획,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계획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안)별 예상되는 **총사업비 산출, 이행기관의 예산조달 방법 및 의무화 추진 일정 제시**

[단계별 추진 계획의 예시]



감축목표	1. 2050 탄소중립 계획(안)을 최종 목표로 계획(안) 제시 2. 예산 확보 현황과 강화되는 NDC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3. 단계 구분 시, 선행 단계에서 적용된 요소기술이 폐기되지 않고 지속 사용되도록, 합리적인 요소기술 적용 계획 수립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3. 공공건축 기획

(**목표**) 공공건축 기획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행정업무 수행

① 공공건축 기획업무 수행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①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③ 디자인관리방안
④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⑤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⑥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⑦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⑧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⑨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⑩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3. 공공건축 기획

(**목표**) 공공건축 기획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행정업무 수행

②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대응(검토 결과 보완 등)

③ 설계 관련 심의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자료 작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수행)

<참고> 설계비 추정가격 기준에 따른 업무지원 범위
① (모든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② (5천 ~ 1억원 미만) 건축기획+공공건축심의
③ (1억원 이상)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4. 설계 지원

(**목표**) 기본·실시설계 지원을 통해 목표 에너지절감률 달성에 기여

① 설계공모 지원

-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계획서(이하 ”GR추진계획서)”를 고려하여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설계 공모 종합 지원**

② 설계지원

- 그린리모델링 전술 설계과정(계획, 중간, 실시설계)에서 **“GR 추진계획서”의 반영 여부 검토 및 자문(필요시 공사 내역 변동에 따른 컨설팅 재실시)**
-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GR추진계획서”의 그린리모델링 **목표 수준 확인 및 검토**
- 그 밖에 설계 단계에서 이행기관과 설계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 지원 일체 지원(인허가 지원 등 포함)

③ 건축위원회 심의 및 기술심의 등 지원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기술위원회 심의 등** 필요서류 작성 및 **지원**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상세 사항은「건축법」,「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 설계 도면 검증 시 컨소시엄 **소속 건축사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검토·확인 必**

02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5. 기타 업무

① GR 추진계획변경 지원

- 이행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GR 추진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의견서 작성 등 **기술·행정 지원***

  ※ 공사 내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분석, 공사비 변경 검토 및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참석 등 일체

② 사업 기술역량 이전

- (기술역량 이전) 운영기관·이행주체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에 대한 보유 기술 및 관련 노하우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 역량 이전**
- (교육지원) 이행기관 및 관계자(설계자·시공자 등) 대상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에너지 시뮬레이터 교육 포함**) 교육 및 워크숍 지원**

③ 기타지원

- 관련 법령(이행기관이 소속된 조례 포함) 등에 따라 이행기관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과정(설계단계까지)에서 발생하는 절차 지원 (*예비타당성 검토 등)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고서 등 성과품 양식 개발**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지원**
- 총괄·운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설명회, 녹색건축한마당, 우수사례 탐방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행사지원**
- 그 밖에 본 사업 완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CHAPTER 4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01 제출서류 안내

부문	제출 서류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한글, PDF	-
2	**사업계획서(정량평가)**		별지 제2호 서식	한글, PDF	분량제한 없음
3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정성평가) 기본양식	별지 제3호 서식	한글, PDF	60페이지 이내 (표지 및 간지 포함)
		사업계획서(정성평가) 요약서	-		
		신청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예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참여 인력 현황(예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도(예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예산계획 총괄표(기본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예산계획 세부계획표(기본양식)			
4	**샘플보고서**		-	한글, PDF	분량제한 없음
5	**발표자료(사업계획서(정성평가 부문), 샘플보고서)**		-	PPT, PDF	30분 분량
6	**기타**	신청자격 증빙자료 일체	-	PDF	주관기관, 공동기관 모두 제출
		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설명 금지 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본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인감신고서(기본양식)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7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별도안내	
	보안서약서(기본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형식에 없는 증빙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만 첨부 가능(원본대조필 必)**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의 경우 제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사업 참여자 모두 제출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 신청기관은 과업내용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전국에 분포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 15동(임의)***을 대상으로 **추진일정 및 투입인력 등을 포함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계획**

*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중, 신청기관이 임의 선정

구분	내용
노후도	준공 후 10년 이상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 시설
규모	연면적 3000m^2 이상

② 유형별 **예시 건축물(5동)별** 본 사업의 **과업내용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안)***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포함

❖ **제시된 목차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 보충·수정 가능**

❖ **제시된 양식(별지 제1호~11호)을 활용**하여,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양식을 보충·수정 가능**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사업계획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정성평가) **요약본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해당사업의 공모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사업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계획서에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이 감수**함
- 작성양식(한글 파일의 경우)
  - **작성형태** : **한글(A4용지)**
  - **작성분량** : **60페이지 이내(표지 및 간지 포함)**
  - **출력물** : 별도로 제출할 **출력물 없음**
- 사업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은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1단계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 역량	· **수행기관 역량 평가** - 제안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 과업 전문분야에 따른 조직 구성의 유기성 - 참여기관의 신뢰도 및 안전성	5
과업 이해도	· **정책 이해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	5
	· **과업 이해도** - 기술지원 과업 목표의 정합성 - 기술지원 과업 요구사항 분석의 구체성	5
사업 수행계획	· **추진방향·전략의 적정성** - 사업목표와 세부 과업 간 연계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대상 및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적합성 - 제안 요구사항별 실행 방안의 명확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10
	· **추진체계의 타당성** - 과업 단계별, 참여기관별 수행역할 및 협력지원 체계 구성의 적정성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세부 요구사항과 제안서 내용의 부합성 - 과업내용을 고려한 추진일정 계획의 합리성	5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1단계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실행	·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절차** - 실행방법 및 수행절차의 구체성·명확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 **과업별 투입인력·자원의 적정성** - 투입인력 구성 및 역량의 우수성 - 투입장비의 전문성	5
	· **사업추진 과정의 운영·협업 및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 운영기관, 의무화 대상기관, 공동수행 기관간 협업·협의 절차의 구체성	5
	· **사업수행계획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수행역량** -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점검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 - 일정지연 발생 시 대응 및 만회계획의 구체성	5
사업성과	· **사업성과품 계획의 완성도 및 활용성** - 제안된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완성도 - 사업목적 및 세부 과업의 부합성 - 성과품의 전문성 및 정확성, 품질 수준 - 성과품의 활용성 및 적용 가능성	5
사업관리	· **사업 관리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단계별 일정 및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5
	· **관련 기술이전 우수성** - 보유한 신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업 관계자 교육 계획 등	5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1단계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관리	**·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및 인력 관리 방안 적정성 - 보안자료 관리방안	5
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계획	**·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 단계 및 참여기관별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단계를 고려한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 국고보조사업 이해도 및 부정수급 예방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정산 업무 이해도 - 지출 증빙자료 관리 등 부정수급 취약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 시 보고·시정·환수 등 대응절차의 구체성	5
소계		**90**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사업비 배분 계획 수립 방법 참여기관별, 비목·세목별, 기술지원 세부 업무별 구분

세부 업무	총사업비	주관기관(A)	공동기관(B)	공동기관(C)
기초 조사				
GR 추진계획 수립				
공공건축 기획				
설계지원				
기타 업무				
계(비율)	(100%)	(100%)	(100%)	(100%)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사업비 배분 계획 수립 방법 참여기관별, 비목·세목별, 기술지원 세부 업무별 구분

비목	세목	총사업비	주관기관(A)	공동기관(B)	공동기관(C)
인건비[110]	보수[01]				
	기타직보수[02]				
	기타인건비[05]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임차료[07]				
	유류비 등[08]				
	차량비[09]				
	재료비[11]				
여비[220]	국내여비[01]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기관업무비[02]				
계 (비율)		(100%)	(50%)	(35%)	(15%)

02 사업계획서(정성) 작성 방법

사업비 배분 계획 수립 방법 참여기관별, 비목·세목별, 기술지원 세부 업무별 구분

세부 업무	비목	세목	총사업비	주관기관(A)	공동기관(B)	공동기관(C)
기초 조사	인건비[110]	보수[01]				
		기타직보수[02]				
		기타인건비[05]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임차료[07]				
		유류비 등[08]				
		차량비[09]				
		재료비[11]				
	여비[220]	국내여비[01]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기관업무비[02]				
소계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나, 사업 추진 및 집행을 위해 **내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 필요**

03 예시 건축물

번호	건물명	주용도	주요 특징
1	○○예술회관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
2	○○문화센터	운동시설	•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사무실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 • 수영장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무관한 에너지다소비 설비 포함
3	○○노인전문병원	의료시설	• 수술실, 입원실, 진료실, 업무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 • 입원 환자 등으로 건물 일괄 폐쇄 불가
4	○○공항 여객터미널	운수시설	• 다수 대중이 상시(24시간) 이용하여 전체 건물 일괄 폐쇄 불가 • 보안시설(다급)
5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 타 건축물과 열원설비가 연계되어 해당 건축물로부터 급탕·난방열을 공급받아 사용 중

03 예시 건축물

1. ○○예술회관

구분	내용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세부용도(포함시설)	공연장(극장),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
위치	전남 순천시
사용승인일	1993.03.31
허가일	1987.12.31
연면적	6,508.43
대지면적	5,909
건축면적	2,278.3
건폐율	38.56%
용적률	85.34%
층수(지상/지하)	지상 4층 / 지하 1층
단독형/단지형	단독형
타 건축물과의 관계	해당없음
사용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유류**
도면 현황	**출력물(사용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업데이트 안됨)**
특이사항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

2. ○○문화센터

구분	내용
주용도	운동시설
세부용도(포함시설)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사무실, 지하주차장 등
위치	서울 광진구
사용승인일	2008.10.17
허가일	2006.07.25
연면적	8,176.59
대지면적	3,690
건축면적	2050.94
건폐율	55.58%
용적률	157.37%
층수(지상/지하)	지상 5층 / 지하 3층
단독형/단지형	단독형
타 건축물과의 관계	해당없음
사용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유류**
도면 현황	CAD 파일(사용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업데이트 안됨**)
특이사항	수영장 등 **에너지효율과 무관한 에너지다소비 설비** 포함

03 예시 건축물

3. ○○병원

구분	내용
주용도	의료시설
세부용도(포함시설)	입원실, 치료실, 휴게실, 상담실, 강당 등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사용승인일	2005.06.24
허가일	-
연면적	6,490.77
대지면적	8,900
건축면적	1,740.26
건폐율	19.55%
용적률	55.57%
층수(지상/지하)	지상 5층 / 지하 1층
단독형/단지형	단독형
타 건축물과의 관계	해당없음
사용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유류**
도면 현황	**출력물**
특이사항	**노인전문병원으로 다수의 통원 및 입원 환자 상시 발생. 의료장비가 많고, 대부분의 냉난방설비는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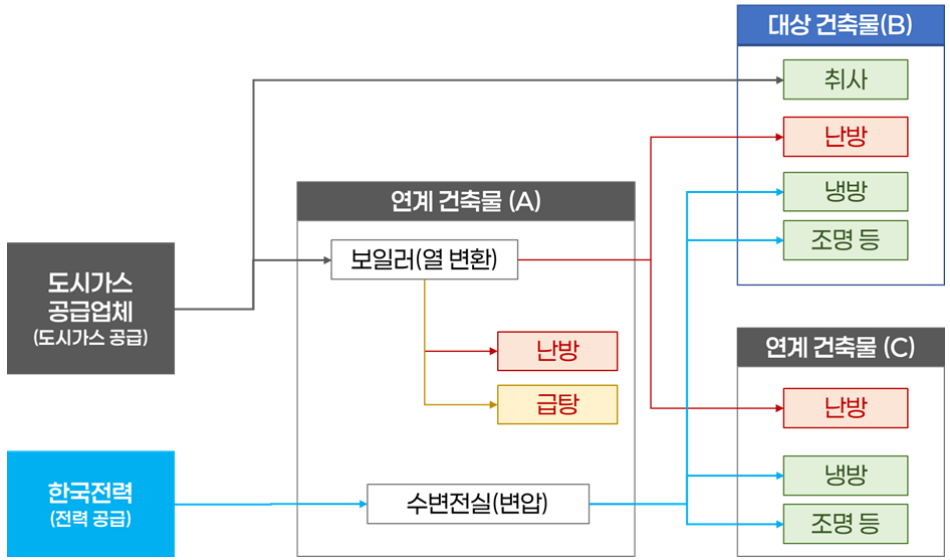
4. ○○공항 청사

구분	내용
주용도	운수시설
세부용도(포함시설)	여객터미널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용승인일	1983.11.30
허가일	-
연면적	95,397.88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상/지하)	지상 4층 / 지하 1층
단독형/단지형	단독형
타 건축물과의 관계	해당없음
사용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도면 현황	**출력물(사용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업데이트 안됨)**
특이사항	**보안시설(나급), 다수 이용객 상시 이용, 24시간 개방**

03 예시 건축물

5. ○○도서관

구분	내용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세부용도(포함시설)	도서관, 식당
위치	강원 춘천시
사용승인일	1990.06.08
허가일	1989.11.02
연면적	11,446.4
대지면적	-
건축면적	2,646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상/지하)	지상 5층 / 지하 0층
단독형/단지형	**단지형**
타 건축물과의 관계	**타 건축물(A동)로부터 열에너지 수급**
사용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열
도면 현황	**출력물(사용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업데이트 안됨)**
특이사항	**연계 건축물(A동)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여, 열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계측 불가**

구분	내용
단지 구성	연계건축물(A) 연구동 / 대상건축물(B) 도서관 / 연계건축물(C) 사무동
에너지 흐름	

04 샘플보고서 작성 방법

- **보고서(최종 성과물)의 구성·분석·작성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소에 대하여 모든 기술지원 업무내용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샘플 보고서 작성·제출**

❖ 대상 건축물 :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중, 신청기관 임의 선정

구분	내용
노후도	준공후 10년 이상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 시설
규모	연면적 3000m^2 이상

샘플보고서 주요 내용

① 사업개요, 주변 현황 분석
② 건축물 현황분석 : 분석에 따른 취약부분 원인 파악 및 개선 사항 검토
③ 이행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
④ 에너지 사용량 분석 : 에너지 성능 저해 요인 분석·검토
⑤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분석
⑥ 개략공사비 산출 : 에너지성능 개선 및 실내환경 개선 적용기술 등 성능개선에 따른 개략공사비 산출
⑦ 구조보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술요소에 대해서 개략 소요비용과 소요기간의 제시
⑧ 사업프로세스 작성 :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절차에 따라 의무화 이행기관이 단계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구성

05 발표자료 작성 방법

- 본 공모의 보조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정성) 및 샘플 보고서를 요약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형태** : **PPT** 또는 PDF
  - **작성분량** : **발표시간 30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 (질의문답 20분 별도)

    * **신청기관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서 이에 따른 발표자료를 재요구할 수 있음
  - **출력물** : 별도로 제출할 **출력물 없음**

06 사업계획서 등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작성방법 등 본 공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 **인용 자료 및 데이터는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경우 제외)
-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접수 후 수정 불가)**
- **신청기관은 제시된 정보에 대한 확인을 권고**하며, 운영기관은 공고문이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을 책임지지 아니함
- 본 공고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계획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보안 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감사합니다